



한해 귀농·귀촌 47만명 30대 이하 젊은층 주도

통계청, 작년 총 33만가구 이사 인구이동 6.1% ↓ 2년째 감소세 30대 이하, 60대 귀농 흐름 지속

2017년 962만9000명, 2018년 971만 4000명이다.

정부는 그러나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연령층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은퇴 연령층(55~65세)은 2019년 847만명에서 2026년 941만명으로 증가한다.

귀농·귀촌 특징을 보면, 연령별로 30대 이하 젊은층 귀촌과 60대 귀농 흐름이 지속된다. 30대 이하 귀촌 가구 비중은 전년 43.8%에서 44.3%로 0.5% 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귀농 가구 비중도 전년도 28.3%에서 30.3%로 2.0%포인트 증가했다.

또 귀농에서는 오랜기간 준비하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해 가구주가 먼저 이주 후 가족 구성원이 합류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귀농가구 비중은 68.9%에서 72.4%로 증가했다.

/한용수 기자 hys@

4천만원 번 개미, 421만원 세금 거래세는 유지... '이중과세' 논란

정부, 금융투자 양도소득세 개편안 금융투자소득 신설, 2022년 적용

2천만원 수익엔 증권거래세 절감 증권 거래세율 단계적 폐지 주장

정부가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투자 성과에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식 펀드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1억 투자로 4000만원 수익...세금 35만원→421만원

이번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대주주에게 국한된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초과 구간에서는 25% 세율을 매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가 0.15%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에게만 양도소득이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예를 들어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의 A주식 2000주를 1억원에 매입한 뒤 주가가 7만원으로 올라 1억 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세금은 현행 제도로 35만원, 새 제도로 421만원이 된다.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2020년	증권거래세: 0.25%	2022년	0.23%	2023년	0.15%
펀드(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등 소득 원천별 과세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개인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통산	
금융투자소득 과세 적용 세율		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기본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연임뉴스 자료/기획재정부		국내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까지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을 하나로 묶어 250만원 공제			

현재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지만, 2023년 이후에는 매매차익 4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를 적용받아 4000만원을 낸다. 여기에 증권거래세(0.15%) 21만원도 내야 한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1억원을 투자해 2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면 오히려 증권거래세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0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면 오히려 세금은 부담은 준다.

코스닥시장에서 주당 5만원인 A주식 1000주를 5000만원에 매입한 뒤 주가가 7만원으로 올라 7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경우 현행 제도로 17만5000원이고, 새 제도로는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거래세 폐지해야”

이날 발표가 있는 후 증권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주식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내 개인투자자 시장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은 6.02%나 하락했다. 또 NH투자증권(-4.21%), 미래에셋대우(-4.73%), 삼성증권(-3.76%), 한국금융지주(-3.83%) 등 대부분의 증권주가 3% 이상 하락 마감했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 회전율을 높일만한 전

문 투자자들의 수는 적은 반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는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의 방안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투자자들이 양도세와 거래세를 함께 내야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안을 보니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에 증권 거래세 세율 인하 스케줄(일정)만 나와 있고 폐지 언급이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 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는 전면적으로 확대되던 탄력세율 적용과 면세 범위 설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올 물가상승률 0.3% 전망... 당분간 낮은수준 유지”

한은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국제유가 큰 폭 하락 등 영향”

올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보다 낮은 0.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전반에 전례없는 충격을 초래했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둔화됐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3%로 지난해 0.4%보다 낮아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1월 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1%대 중반을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이후 빠르게 둔화됐

다”며 “4월 중 0.1%로 낮아진 데 이어 5월에는 -0.3%를 기록하면서 물가안정 목표 2%를 크게 하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수요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여행, 숙박, 외식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약화됐다”며 “이에 더해 무상교육 확대, 개소세 인하 등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및 소비 촉진책이 추가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공고 제2020-0623-001호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공람 공고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의 작성)에 의한 환지계획(안)이 작성되었기에, 같은 법 제29조(환지계획의 인가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내 공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람 기간 내에 조합에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부재·미수령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같습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행방식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41,285.3㎡
- 시행자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공람내용

- 환지계획 조서 및 도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항

다.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06.25. ~ 2020.07.14.(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공람장소 :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9-37(406호)/ 전화 : 031-907-7711]
- 공람 서류 및 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공람에 따른 의견서 제출 :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직접 또는 우편)

2020. 06. 23.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